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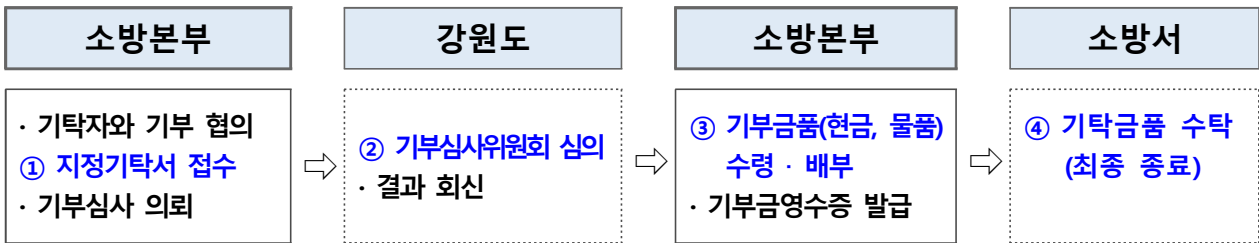
[강원도소방본부] 자발적 기탁금품 처리절차 안내

소방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자발적 기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 관련하여 업무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지정기탁금품 기부심사 제도(기부금품법 요약)

- 국가기관 등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제한(법 제5조 제2항)
 - (원칙)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금지
 - (예외)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, 예외적 허용

□ 업무처리 절차



① (지정기탁서 접수) 기탁자(기업, 개인)는 소방본부 기탁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지정기탁서 등 작성 및 제출(원본 우편 발송)

* 제출서류 : (현금 기탁) 지정기탁서 / (물품 기탁) 지정기탁서, 기탁 물품 견적서

** 담당자 :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보건안전복지팀 이호찬(033-249-5438 / hori0190@korea.kr)
 (우편번호 24266)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소방본부 소방행정과

② (기부심사위원회 심의) 관계부서 위원회를 통해 기부금품 여부 심의

③ (기탁금품 수령·배부) 위원회 심의 승인 후 현금, 물품 구분 처리

- 현금의 경우, 소방 세입 계좌 입금(기탁자) 및 세출 절차 준수 집행(담당자)
- 물품의 경우, 해당 부·관서 제공(기탁자) 및 시스템 입력, 수탁 운영(담당자)
- 기탁자 세액공제를 위한 '기부금 영수증' 필요시, 담당자 요청 및 발급

④ (기탁금품 수탁) 현금, 물품 수탁 완료 : 최종 종료

□ 세액공제 관련 : 「소득세법」 제34조·제59조, 「법인세법」 제24조